

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792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5. 5. 15.

제출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효과적인 군정 홍보 추진과 홍보에 대한 내부 인식 제고를 위해 인터넷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 역량 강화 교육 운영과 포상금 등 지급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인터넷 홍보 매체 관련 시행 가능 사업 확대(안 제4조)
 -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예산지원 범위 명확화(안 제7조)
-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포상 기준 명확화(안 제9조)
 - 인터넷 홍보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에 기여한 우수부서 또는 공무원
 - 인터넷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 역량 강화 목적으로 실시된 교육의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원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나. 기타

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(2) 입법예고(2026. 1. 29. ~ 2. 19.) 결과 : 의견없음
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(※붙임)

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제1항 중 “시민홍보단”을 “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, 시민홍보단”으로 한다.

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,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포상금 등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인터넷 홍보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에 기여한 우수부서 또는 공무원
2. 인터넷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 역량 강화 목적으로 실시된 교육의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원

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및 상품권 지급액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포상금

가. 공무원 : 1인당 500,000원 이내

나. 부서 : 부서당 1,500,000원 이내

2. 상품권(공무원만 해당) : 1인당 50,000원 이내

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및 상품권의 지급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사업 등) ① (생략)</p> <p>1. ~ 5.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조(사업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예산지원) ① 군수는 <u>시민홍보단</u>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,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7조(예산지원) ① ----- <u>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, 시민홍보단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<신설></u></p>	<p>제9조(포상금 등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1. <u>인터넷 홍보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에 기여한 우수부서 또는 공무원</u></p> <p>2. <u>인터넷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 역량 강화 목적으로 실시된 교육의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</u></p>

	<p>원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및 상품권 지급액 범위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포상금</p> <p>가. 공무원 : 1인당 500,000원 이내</p> <p>나. 부 서 : 부서당 1,500,000원 이내</p> <p>2. 상품권(공무원만 해당) : 1인당 500,000원 이내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및 상품권의 지급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.</p>
<p>제9조 ~ 제11조 (생략)</p>	<p>제10조 ~ 제12조 (현행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)</p>
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교육 운영에 따른 교육 강사료와 내부 직원 포상에 따른 포상금 지급 등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5항제1호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
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언론홍보 실무교육 운영 및 포상금 지급 규모에 따라 소요 예산은 변동될 수 있으며,
예상 소요액은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으로 판단됨.

- 교육 운영에 따른 예상 소요 예산 : 총 2,174,000원

- 강사수당 : 언론인(1급) 강의 시간(2시간) × 2회 = 740,000원
- 인원할증 : 강사수당 × 30% × 2회 = 222,000원
- 원 고 료 : 13,000원 × 12매 × 2회 = 312,000원
- 현 수 막 : 100,000원 × 2매 × 2회 = 400,000원
- 포 상 금 : 25,000원 × 10명 × 2회 = 500,000원

- 인터넷 매체 홍보 활성화 유공자 포상에 따른 예상 소요 예산 : 총 3,000,000원

작 성 자

소속 및 직위	홍보협력과 홍보팀장	성명(연락처)	윤은주(668-2161)
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	---------------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